

제53차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 의결사항

심의일자 : 2024. 2. 23.

□ 안 건 명 : 수서동 복합문화센터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계획심의

위 안전에 대한 제53차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 아래 주요 심의내용 및 별첨 위원별 심의 의견을 보완·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채택」 의결함.

[주요 심의내용]

- 「부실공사 Zero 서울 추진계획(시장방침 제143호, 2023.11.24.)」에 따라 감리의 실질적인 현장감독 시간 확보 등을 위하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기술지원기술인 비율을 축소하고 현장 상주기술인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시공단계 안전관리 난이도는 1.0이상만 적용할 것
- 소방감리원의 배치기준(인·일 산출)이 적정한지 확인바람
- 재해·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기술용역의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를 포함하여 발주하기 바람
- 손해배상공제보험료 중 시공 후 단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

첨부 : 위원별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각 1부. 끝.

본 검토서는 2024. 2. 16.(금)까지 E-mail(eunki13@seoul.go.kr)로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 건 명: 수서동 복합문화센터 신축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 항 목 | | 검 토 의 건 |
|----------------|--------|--|
| 사업특성평가 적정성 | 공사특성 |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 수서동 복합문화센터 신축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의 공종분류상 보통의 공종 공사 및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상 1종,2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
| | 공사수행방식 |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 공사수행방식은 기타공사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 | 사업여건 |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 가용인력의 최근 5년간 5건 미만 수행의 근거 확인을 위해서, 가용인력의 실무경력 사항에 대해 근거 제시 필요. |
| 사업관리방식 검토 | |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 체계적인 사업관리의 필요성 및 직접감독 기술인력 부족·배치자격 미충족 등으로 시공단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됨. |
| 배치인력 산출 적정성 | |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 용어 변경 검토 : 기술자 ⇒ 기술인, 기술지원기술자⇒기술지원기술인 ○ 공사착공 전 각 공종별 충분한 도면검토가 필요하므로, 기술지원기술인이 사업초기 투입되어 도면검토를 할 수 있도록 배치계획에 대한 검토 필요. |
| 기 타 | | ○ 공사난이도 산정 시 골조공사비 비중을 20%을 반영하였으나, 정확도를 위하여 '유사시설물 평균 골조공사 비율 조사' 및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의 자료를 참고하여 규모·연면적·세부스페이스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유사 사례를 분석하고 재검토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음 |
| 종합 심의의견 | |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6조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

2024년 2월 16일

심의위원 :

본 검토서는 2024. 2. 16.(금)까지 E-mail(eunkil3@seoul.go.kr)로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 건 명: 수서동 복합문화센터 신축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 항 목 | | 검 토 의 견 |
|----------------|--------|--|
| 사업특성평가 적정성 | 공사특성 | 적정(<input checked="" type="checkbox"/>), 조건부 적정(<input type="checkbox"/>), 부적정(<input type="checkbox"/>) ○ |
| | 공사수행방식 | 적정(<input checked="" type="checkbox"/>), 조건부 적정(<input type="checkbox"/>), 부적정(<input type="checkbox"/>) ○ |
| | 사업여건 | 적정(<input checked="" type="checkbox"/>), 조건부 적정(<input type="checkbox"/>), 부적정(<input type="checkbox"/>) ○ |
| 사업관리방식 검토 | | 적정(<input checked="" type="checkbox"/>), 조건부 적정(<input type="checkbox"/>), 부적정(<input type="checkbox"/>) ○ |
| 배치인력 산출 적정성 | | 적정(<input checked="" type="checkbox"/>), 조건부 적정(<input type="checkbox"/>), 부적정(<input type="checkbox"/>) ○ 준공 후 약 2개월 정도 하자보수지원 인력 현장 상주 검토 요망 |
| 기 타 |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투입계획표 관련,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상주) 토목분야 특급기술자를 고급기술자로 변경하여 2026년 에 2~3개월 배치 검토 요망 |
| 종합 심의의견 | | 적정(<input checked="" type="checkbox"/>), 조건부 적정(<input type="checkbox"/>), 부적정(<input type="checkbox"/>) ※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6조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

2024년 2월 16일

심의위원 :

본 검토서는 2024. 2. 16.(금)까지 E-mail(eunkil3@seoul.go.kr)로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 건 명: 수서동 복합문화센터 신축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 항 목 | | 검 토 의 견 |
|----------------|--------|---|
| 사업특성평가 적정성 | 공사특성 |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 의견 없음 |
| | 공사수행방식 |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 의견 없음 |
| | 사업여건 |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 의견 없음 |
| 사업관리방식 검토 | |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 의견 없음 |
| 배치인력 산출 적정성 | |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 건설사업관리 배치계획 및 업무범위 현황(수서동) 세부항목의 조정 필요 등(기타 검토의견 참조) |
| 기 타 | | ○ 건설사업관리 과업내용서 검토의견 참조 |
| 종합 심의의견 | |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6조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

2024년 2월 19일

심의위원 :

붙임 : 기타 검토의견

| 항 목 | 검 토 의 견 |
|-----|--|
| 기 타 | <p>[배치인력 산출 적정성]</p> <p>○ 건설사업관리 배치계획 및 업무범위 현황(수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절차서 작성·운영”은 동시 작성이 가능하므로 적용수량 조정(1.0 → 0.5) - “사업정보관리스시스템 운영, 일반 행정업무”는 업무상 병행이 가능하므로 적용수량 조정(48.0 → 24.0) -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적용수량(0.5) 대비 산출 인원수(109.2) 재확인 요함 - “기술검토 및 교육”은 과업내용서에 업무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반영 요함 - “계약자간 시공 인터페이스 조정”은 건축,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관급(도급자, 관급자)을 고려하여 적용수량 조정(25.0 → 8.0) 요함 <p>※ 공중간 인터페이스는 일반 행정업무중 “주간, 월간공정회의”시 협의, 조정 가능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 타당성 검토”는 과업내용서에 업무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반영 요함 - “종합시운전계획 및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는 준공 단계 동시 검토업무 수행이 가능하므로 적용수량 조정(각 1.0 → 0.5) 요함 - “시설물의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은 과업 내용서에 업무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적용수량 조정(1.0 → 0.5) 반영 요함 <p>○ 건설사업관리 산출내역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 직접경비 4.4 현지사무원”이 비고란에 미적용으로 명시되어 있음. 재확인 요함 |

○ **건설공사 투입인원수 산정 수정**

- “건설사업관리 배치계획 및 업무범위 현황(수서동)” 변경 반영에 따라 투입인원수 산정 수정 요함

[기타 : 건설사업관리 과업내용서]

○ **건설기술용역 평가 항목 업무수행 명시**

- “건설기술심의 요청서 2. 건설사업관리계획 용역평가”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평가 항목 업무수행시 이행 명시 요함

-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2조 평가의 대상, 제83조 평가의
기준 및 절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4조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 지침

○ **2.4 과업수행범위**

- 건설사업관리 배치계획 및 업무범위 현황(수서동) 항목중 삭제된 항목 반영

- 삭제항목 : ① 공통업무 4), 6), ② 시공단계 업무 18)

○ **2.11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근무수칙**

- ⑥항 기술지원 기술인 업무범위 수정 : “건설공사 사업관리 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수칙

○ **3. 공통업무 3.1 회의의 운영 ④ 회의의 종류중 주간 및 월간 정기회의 내용 추가**

- 예정 대비 실시공정율, 공종별 실적/계획 현황, 주요 현안 사항(시공, 품질, 자재, 안전/환경, 기상, 설계변경 등) 공유로 공종간 인터페이스 분석, 협의, 해결토록 회의내용 추가 요함

○ **3.2 보고(서) 및 성과품 납품 ③항 수정**

- 정기보고중 월간보고와 분기 보고서중 한가지만 반영
- 시공단계 실시설계 검토 보고서는 착공후 3개월이내 검토 완료 보고로 수정 요함

○ 3.3 문서 및 자료 관리

- ⑥항의 7) CD보관 → USB보관으로 수정
- ⑧항에 환경관리 추진실적 보고서(환경관리 활동, 환경보전비 사용실적 등) 추가 요함

○ 3.6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 추적·관리 삭제

- 건설사업관리 배치계획 및 업무범위 현황(수서동) 삭제된 항목이므로 동일하게 반영

○ 4. 시공단계업무 4.1 일반행정업무 ①항에 환경관리 추가

- 환경관리 추진실적 보고서 ~
- 10) 항목 재검토 요함

○ 4.3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⑧항 내용 추가

- 건설사업관리단 조직에 환경담당 지정 추가 요함

○ 4.4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내용 추가

- 사토장 선정의 적정성 검토, 흙막이 지보공과 외벽 수직철근 간섭(철근 수직이음길이 확보)여부 확인 추가 요함 : 공공 건설공사 주요 증액 설계변경 항목

○ 4.5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 ④항에 환경관리계획서 작성 기준 명시 요함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및 대기환경 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지하수법, 환경영향 평가법, 오수분류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 등)

○ 4.7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에 가설시설물 구조계산서 검토 추가

- 가설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조계산 및 그 결과의 검토 포함 요함

○ 4.10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에 콘크리트 단위수량 확인 업무 추가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개정에 따라 품질관리 강화방안 및 부실시공 근절대책 제도개선을 위한 단위수량 측정 업무 수행 추가 요함 : : 서서울미술관 건립공사 공사비 증액 설계변경 사항 ○ 4.17 기성·준공검사 및 재시공 검사주체 및 관계규정 확인,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성·준공검사자(기술지원 기술인)의 정의를 제시하고, 적용 법령 수정(국가계약법 → 지방계약법) 요함 ○ 각종 인증항목 및 등급 명시 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녹색건축물 인증, B/F, 제로에너지 인증, 지능형건축물 인증, 초고속 정보통신건축물 인증, 신재생에너지 등 |
|--|---|

※ 서면심의 검토시 유의사항

1. 서면심의이므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송부 요망 (스캔 등)

- 발주기관 검토의견을 제출받기 위하여 위원님 의견을 통보하는 등 한글문서 편집 작업이 있으므로 작성원문도 E-Mail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6조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3. 발주기관에서 반영하겠다는 검토사항은 심의 채택의견으로 확정되고, 미반영사항은 위원님께 발주기관 검토의견을 송부하여 다시 재검토를 받아 보완, 조정, 삭제 등을 거쳐 정리됩니다.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수서동 복합문화센터 신축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 항 목 | | 검 토 의 건 |
|----------------|--------|--|
| 사업특성평가 적정성 | 공사특성 | 적정(<input checked="" type="checkbox"/>), 조건부 적정(<input type="checkbox"/>), 부적정(<input type="checkbox"/>) ○ 공종은 보통 공종, 난이도는 1,2종 외 공사 |
| | 공사수행방식 | 적정(<input checked="" type="checkbox"/>), 조건부 적정(<input type="checkbox"/>), 부적정(<input type="checkbox"/>) ○ 기타 공사에 해당 |
| | 사업여건 | 적정(<input checked="" type="checkbox"/>), 조건부 적정(<input type="checkbox"/>), 부적정(<input type="checkbox"/>) ○ 사업 규모, 기간, 민원, 유사경험 등 적정 |
| 사업관리방식 검토 | | 적정(<input checked="" type="checkbox"/>), 조건부 적정(<input type="checkbox"/>), 부적정(<input type="checkbox"/>)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지침에 의거 적정 |
| 배치인력 산출 적정성 | | 적정(<input checked="" type="checkbox"/>), 조건부 적정(<input type="checkbox"/>), 부적정(<input type="checkbox"/>)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지침에 의거 적정 |
| 기 타 | | ○ 건설사업관리가 부실 없이 경제적,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안전성을 확보하여 최적의 품질로 완성되도록 노력 |
| 종합 심의의견 | | 적정(<input checked="" type="checkbox"/>), 조건부 적정(<input type="checkbox"/>), 부적정(<input type="checkbox"/>) |

2024년 2월 16일

심의위원 :

본 검토서는 2024. 2. 16.(금)까지 E-mail(eunki13@seoul.go.kr)로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 건 명: 수서동 복합문화센터 신축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 항 목 | | 검 토 의 견 |
|----------------|--------|--|
| 사업특성평가 적정성 | 공사특성 |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
| | 공사수행방식 |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
| | 사업여건 |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
| 사업관리방식 검토 | |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
| 배치인력 산출 적정성 | |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
| 기 타 | | ○ |
| 종합 심의의견 | |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6조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

2024년 2월 16일

심의위원 :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 건 명: 수서동 복합문화센터 신축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 | 항 목 | 검 토 의 견 |
|------------------|--------|--|
| 사업별 적정성 평가 | 공사특성 |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
| | 공사수행방식 |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
| | 사업여건 |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
| 사업관리방식 검토 | |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
| 배치인력 산출 적정성 | |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 「부실공사 Zero 서울 추진계획(시장방침 제143호, 2023.11.24.)」에 따라 감리의 실질적인 현장감독 시간 확보 등을 위하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기술지원기술인 비율을 축소하고 현장 상주기술인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기술지원기술인 비율을 10%로 우선 검토하되, 공사여건상 10% 적용이 곤란한 경우 축소비율 부분 조정) ○ 소방감리원의 배치기준(인·일 산출)이 적정한지 확인바람 |
| 용역비의 적정성 | |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 손해배상공제보험료는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금액만 적용하여 산정할 것(시공 후 단계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 시공단계 안전관리 난이도는 1.0이상만 적용할 것 |
| 기 타 | | ○ 재해·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기술용역의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를 포함하여 발주하기 바람 |
| 종합 심의의견 | |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6조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

2024년 2월 16일

심의위원 :